

청구 이유

I.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 실태와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현황

김포시에 등록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208개(2013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미등록공장을 포함하면 약 1만 여개 이상이며 이 중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장은 808개에 불과 하며 나머지는 관리지역,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입지 공장입니다.

김포 환경문제는 이러한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에 기인하며 그 중에서도 주물공장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주거지역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에 바로 인접하여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일상적인 소음과 악취, 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대기, 소음, 악취등과 관련된 각종 크고 작은 민원이 2013년 1,444건, 2014년 1,348건, 2015년 1,596건, 2016년 1,460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약 320회의 각종 언론과 방송으로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일원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과 지역 주민의 암발병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해 2단계 역학조사(용역 발주 김포시)가 추진되어 1단계 예비역학조사(2013. 9 ~ 2014. 3), 그리고 주변 공장의 특성을 반영한 2단계 본 역학조사(2014.5~2015.10)가 실시되었습니다.

환경역학조사 결과 주민 생체 중금속 농도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요중 니켈이 높았고, 이 지역 건강자료(2004~2013)를 분석한 결과 식도·위·결장·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암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4.47)으로

높았으며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주민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 (95% 신뢰 구간, 1.07-3.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경역학조사 보고서는 또한 ‘암 발생자료, 의료이용자료, 지역주민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이 지역에서 폐암, 심장질환, 골다공증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2.4 ~ 2.10) 환경부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총 86개 사업장 중 72%인 62개소를 적발, 이중 무허가, 미신고 적발 업소가 33건(53.2%)으로 가장 많아 실제로 행정의 관리·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 평균 위반율이 7%(2014년)정도 임을 고려하면 72%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무법지대임을 반증합니다. 특히 당시 김포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주물공장의 경우 단속대상 10개 업체 모두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무허가로 확인돼 공장폐쇄명령을 받고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II.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처리가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3.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다고 판단되는 사항 관련

가.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을 무시하여 지침에서 규정한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주민의 건강·환경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문제가 여론화되자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2013.9)'을 제정하여 단독주거반경 100M, 공동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증거자료 1).

그러나 지침시행 1년 후(2013.9 ~ 2014.9) 확인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753개 공장이 인허가 받거나 공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는 김포시가 지침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공장도 76개(10%)나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증거자료 2).

당시 김포시의 공장 인허가 등록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가 입지제한 대상으로 정한 업종 중 제일 많이 등록되거나 인·허가를 내준 공장은 주물공장등 제1차 금속제조업(업종번호 24)으로 32개(42%)공장이고 그 다음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업종번호 25)으로 21개 공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군(업종번호 20) 10개 공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군(업종번호 22) 8개 공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환경건강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 및 도장·기타 피막처리업 등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지침 고시이후에도 53개 업체나 증가했으며 화학물질 제조업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 3-1. 3-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단독주거에서 반경 100m, 공동주거에서 반경 200m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

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제정·고시 하였지만 당시 인허가 및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주거시설 인접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Y금속(대벽리), H철강산업(대명리)등 일부 업종의 경우 100m 이내에 주거 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공장이 인허가 나거나 아무런 문제없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다량 배출업종의 경우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당시 정보공개를 통해 출장 복명서등을 확인한 결과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김포시 스스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해물질배출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업종들이 새롭게 인허가 되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나. 김포시장은 ① 무허가 배출시설(공장)의 난입을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고, ② 배출시설의 적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거물대리, 초원지리등의 지역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기공의 인허가 되는 상황에서의 김포시 태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증거자료 4). 대성기공은 2011년 8월경부터 계획관리 지역인 거물대리 250번지에 일반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이를 주물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밸브 등의 주물제품을 만드는 이 무허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분진과 화공약품의 악취,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성기공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공장을 운영한 것이 적발되자 201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김포시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15일 대성기공이 공장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고, 공장신설승인 신

청을 받은 김포시는 관련법령 저촉 여부를 심의하고(2012.10.17.)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여부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2012.10.19)하여 제출 받은 후 최종 공장신설승인을 내주었습니다.(2012. 11. 22).

그러나 대성기공이 공장설립이 승인되기 전에 주민들은 주물공장인 대성기공이 공장신설승인 신청 전부터 중금속 유해분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물의 지붕, 옥상은 물론 문을 열어놓으면 집안 까지 분진이 들어와 피해가 심각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공장 이전이나 공장폐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공장 승인 요청을 받고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던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여부를 실제 조사하고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공장 승인을 판단하지 않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사업주가 제시한 시험 성적서만을 근거로 공장신설을 승인해주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공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진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경피해를 받도록 방치한 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대성기공(공장설립승인 2012.10)의 방지시설 설치에 공장설립승인이 된후 5개월여가 지난 2013.3월에야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집진기를 설치(2013.3)한 후에도 공장문을 열고 가동(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거나, 지정 폐기물인 주물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변에 중금속 분진이 흩날리게(폐기물관리법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주민 김의균이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지역주민이 직접 옥상과 발코니 등에서 분진을 채취하여 (2013.1) 조사기관에 분석 의뢰하였고 그 결과 카드뮴, 크롬 납등 10여종의 중금속이 들어있음을 확인(2013.3)한 김포시에 다시 공식적인 재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한동안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여 주민 건강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증거자료 5-1,5-2).

또한 대성기공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한 주민이 김포시에 공장신설승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도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대성기공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확인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대성기공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증거자료 6-1).

결국 언론 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야 김포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배출물질을 채취하여(2013.4.30.) 특정대기유해물질(크롬 화합물 검출(0.026))임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공장폐쇄명령(2014.6.14.)을 내렸습니다(증거자료 6-2).

또한 대성기공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신고도 받지 않고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등 공장 설립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측정결과(2013.4.16.) 대성기공의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소음진동관리법)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대성기공이 공장신설승인을 요청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소음, 악취 등 주민들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하여 주민피해 및 대기환경보전법등의 환경관련법의 위반 여부 등을 세밀히 조사하였으면 사전에 환경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김포시는 이런 직무를 다하지 않고 공장설

립을 승인하여 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는 김포시가 유해물질배출시설의 환경관리 및 단속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사업장을 승인하였으며, 승인 후에도 제대로 환경 단속,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다.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등에 피해를 주던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민원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가 문제가 되고 환경역학조사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었던 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나간 공장들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었음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해서 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김포시는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더구나 당시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2013.9)'을 제정하여 단독주거반경 100M, 공동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던 상황이라 더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유해물질시설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김포시 관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 피해를 이전시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물대리인근 가현리에 있다가 송마리로 이전한 동우금속, 약암리로 이전한 하이테크캐스팅, 송마리로 이전한 서현분채, 석정리로 이전한 KCI주철, 신흥특수 등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았던 업체들이 문제가 되자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공장들입니다.

라. 김포의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김포시 공무원의 무책임한 부당한 환경관리 행태에 때문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2015. 2. 4.부터 2015. 2. 10.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86개 사업장에서 72%인 6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증거자료 7).

적발된 62개소는 총 67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이 중 37개소는 고발, 2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일공업(주) 등 10개 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김포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협영 등 5개 도장시설, 신우산업 등 4개 연마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경산업, 대성연료는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신일포장산업은 대기방지시설 가지배관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규림금속 열처리 등 5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하였고, 창조산업, 태훈가구, 경운은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출업체 지도·점검 업무는 원칙적으로 김포시장에게 있는데, 거물대리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 2012년 2월부터 기산하여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2015. 2. 4. 이전까지 680건의 민원을 제기(환경부 자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의 난립 및 운영을 방치하였습니다. 만약 김포시장이 적정하게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굳이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특별단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86개 사업장 중 72% 사업장이 적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김포시장과 공무원의 안일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에 기인한바 또한 큼니다. 김포시장은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환경피해가 과장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하였습니다(증거자료 8-1). 또한 주민들이 지역내 공장들이 공장문을 열고 가동하여 대기환경법 위반임으

로 지적하고,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은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되고 있다면 공장문을 열고 작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일상적인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무시하고 기업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방치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증거자료 8-2, 8-3).

라. 김포시장은 환경역학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조작 의혹을 방치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실시된 교차분석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여 결과 왜곡을 강요하였습니다.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건강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2013.10월, 1단계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 2단계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5.10월 완료되었습니다(증거자료 9).

김포시는 환경역학조사추진 과정에서 용역추진 기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분석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 실태 및 그 결과의 심각성을 왜곡시킬 수 있음에도 용역기관을 압박하여 최종 결과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증거자료 10).

그러나 환경단체인 환경정의가 환경역학조사기관과 교차분석기관에서 분석했던 토양 샘플을 다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역학조사기관의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써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결과가 신뢰성이 없는 분석결과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증거자료 11). 더구나 역학조사기관과 교차 분석기관의 분석결과의 차이를 이유로 김포시가 별도로 실시한 토양오염조사(2016.3~2016.7) 결과 역시 환경역학조사팀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으로써(증거자료 12) 이전 김포시에서 분석 의뢰하였던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와 신뢰성이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포시가 의뢰한 비교분석기관의 토양오염 분석 결과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분석결과임이 지적되어 교차분석기관과 그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의심되었고, 나아가 샘플 조작의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연히 역학조사 용역기관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하였습니다(증거자료 13).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교차분석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김포시는 의혹을 해소하여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교차분석기관의 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이는 김포시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Ⅲ. 결론

1. 주민들의 환경·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가중시킨 김포시에 대한 공익 감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하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역이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오히려 스스로 제정한 입지제한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역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등 주어진 사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가 가중되고 환경피해는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공익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김포시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김포시의 부당행위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결론

이 사안은 「공익사항의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임으로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